

농업생명과학대학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9.09.06. 부칙1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겸임교원 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공고) ①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과)장 및 대학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연구원, 연구소, 센터 등)은 매월 학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 기간, 지원 자격, 면접 심사 시행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에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대학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은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단,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②항에 따라 특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채용후보자 심사) 채용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과), 협동과정,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서 실시하되,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서류심사(70점)

1. 모집 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10점)
2. (교육·실무·연구) 경력 및 총괄연구업적(30점)
3.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 계획서(30점)

② 면접심사(30점)

1. 면접 또는 공개 발표(30점)

③ 임용 적합성(가/부)[대학 인사위원회][연구 교원은 대학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인사(운영) 위원회]

제4조(심사 단계별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서류 심사는 학부(과), 협동

과정,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대학 주관기관”이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대학 주관기관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교과)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 3명을 대학 주관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1. 협동과정 등 학부(과) 소속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임용자의 소속은 대학(원)으로 한다.
- ② 모집 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 여부는 지원자의 전문분야 등이 모집 대상 분야와 일치하는지를 상(10점)·중(5점)·하(0점)로 평가하여 “중”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며, “하”인 경우 그 이후의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 ③ 경력 및 총괄연구업적은 모집 대상 전공(교과) 분야의 경력 및 업적 등을 평가하고 지원자의 연구업적이 해당 분야에 적합한지, 연구 활동의 지속성 및 우수성, 학문적 기여도가 우수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④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 계획서는 적성, 발전 가능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모집 분야에 대한 목표 및 방법의 우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⑤ 서류심사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49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한다. 면접심사 생략 시 서류심사 100점 만점에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한다.
 1. 모집 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10점)
 2. (교육·실무·연구) 경력 및 총괄연구업적(45점)
 3.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 계획서(45점)
- ⑥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인정한 대상자를 선발 인원 예정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추천한다.
- ⑦ 심사위원은 서류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⑧ 면접 및 공개 발표는 모집분야에 대한 면접 및 공개 발표를 실시하고, 적합성, 창의성,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21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인정한다.

- ⑨ 심사 위원장은 심사 결과 적격자 후보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인사 위원회는 학장으로부터 적격자 후보를 제출받아 임용 적합성을 가·부로 정한 후, 적격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2장 재임용

제5조(재임용 심사) ① 심사위원 구성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농생대 비전임교원 세칙”이라 한다) 제4조 ①항에 따른다.

- ② 대학 주관기관 평가는 심사위원이 해당 대학 주관기관 등에의 기여도, 적합성을 판단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③ 교육 활동 등은 교육·실무·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④ 임용 기간 내 수상, 서훈, 표창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점의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
- ⑤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전임교원을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3장 특별채용

제6조(특별채용 심사) ① 심사위원 구성은 농생대 비전임교원 세칙 제4조 ①항에 따른다.

- ② 심사 절차는 신규채용 심사의 서류 심사만 진행하고, 농생대 비전임교원 세칙 제4조 서류 심사를 준용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대학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인사(운영) 위원회를 통해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3호, 2019.0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비전임 교원(해당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첨 1]

_____교원 신규임용 서류심사 평가표

1. 지원자

성명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채용사항 (학부/전공/기관명)	학부 _____ 전공 _____		
채용분야			

2. 학부(과)/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배 점	평가점수	평가의견	비고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	상(10점) 중(5점) 하(0점)		(평가 요지)	70% 이상 합격
(교육·실무·연구) 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30점		(평가 요지)	
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계획서	30점		(평가 요지)	
합 계	70점	점		

[별첨 2]

_____교원 신규임용 면접심사 평가표

1. 지원자

성명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채용사항 (학부/전공/기관명)	학부		전공
채용분야			

2. 학부(과)/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배 점	평가점수	평가의견	비고
면접 및 공개발표	30점		(평가 요지)	70% 이상 합격
합 계	30점	점		

심사위원(장): (인)

[별첨 3]

_____교원 재임용 심사 평가표

1. 지원자

성명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채용사항 (학부/전공/기관명)	학부 _____ 전공 _____		
채용분야			

2. 학부(과)/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평가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배점)	평가 점수	평가의견	비고
학부(과), 협동과정,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평가 (20점)	(1) 학부(과) 등예의 기여도 (10점)			70% 이상 합격
	(2) 적합성 (10점)			
교육(교육· 실무·연구) 활동 (80점)	(1) 교육·실무·연구 활동에 대 한 평가 (80점)			
가산점 (5점)	수상, 서훈, 표창 등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경우 5점)			
합 계	100점	점		

심사위원(장): _____ (인)